

国会図書館法中改正法律案

~~5/5~~

공백

国会圖書館法中改正法律案

議案	841
番 号	

提案年月日 1970年11月24日

提 案 者 国会運営委員長

提案理由

国会議員의 立法活動에 필요한 国内外 各種 資料의 提供등을 円滑하게 하고 立法調査機能을 充分히 發揮하기 위하여 圖書館機構를 改編 增設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1. 圖書館機構에 法制資料室을 新設하고 法制資料, 擔當官을 두었음.
2. 立法調査局의 第1課, 第2課, 第3課와 第4課를 法制政治課, 財政經濟課, 社會建設課와 文教公報課로 改稱하였음.
3. 室長은 2級乙類 法制資料擔當官은 3級甲類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任命하나 国会公務員法이 制定될 때까지 室長은 1級 또는 2級甲類로 法制資料擔當官은 2級乙類 또는 3級甲類로 補할수 있게 함.

~~5-593~~

공백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입법조사국과 사서국”을 “입법조사국, 사서국과  
법제자료실”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제1과 제2과 제3과와 제4과”를 “법제정치  
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와 문교공보과”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제자료실에 법제자료담당관을 둔다.

제4조 제5항중 “각국, 과”를 “각국 실, 과와 법제자료담당관”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국장, 과장)”을 “(국장, 실장, 과장, 법제자료  
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갑  
류”를 “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은 2급,  
실장은 2급을류, 과장과 법제자료담당관은 3급갑류”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국장과 과장”을 “국장, 실장, 과장과 법제자료  
담당관”으로 “국 또는 과”를 “국, 실, 과 또는 담당”으로  
한다.

1969. 9. 12. 법률제 2142 호 부칙 제4항중 “국장은 1급 또는 2  
급갑류, 과장”을 “국장과 실장은 1급 또는 2급갑류 과장과  
법제자료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572~~

공백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4 조 (기구)	<p>① 국회 도서관에 총무과, 입법조사국과 사서국을 둔다.</p> <p>② 입법조사국에 제 1 과, 제 2 과, 제 3 과와 제 4 과를 둔다.</p> <p>④ 각국 과의 분장사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제 5 조 (국장, 과장)	<p>① 국장은 2 급 과장은 3 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제 4 조 (기구)	<p>① 국회 도서관에 총무과 입법조사국, 사서국과 <u>법제자료실</u>을 둔다.</p> <p>② 입법조사국에 <u>법제정치과</u>, <u>재정경제과</u>, <u>사회건설과</u>, <u>문교공보과</u>를 둔다.</p> <p>④ 법제자료실에 법제자료담당관을 둔다.</p> <p>⑤ 각국, 실, 과와 법제자료담당관의 분장사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제 5 조 (국장, 실장, 과장, 법제자료담당관)	<p>① 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은 2 급, <u>실장은 2 급을류</u>, 과장과 <u>법제자료</u></p>	신설

~~5-671~~

공백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각각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②, ③, 생략</p> <p>④ 국회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 <u>나</u>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u>담당관</u>은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② 국장, <u>실장</u>, 과장과 <u>별제자료담당관</u>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각각 국, <u>실과</u> 또는 담당사무를 장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②, ③ 좌동</p> <p>④ 국회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과 <u>실장</u>은 1급 또는 2급갑류, 과장과 <u>별제자료담당관</u>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부칙 신설로</p>

공백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법은 197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p>	

~~5-56~~

131

공백